



#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정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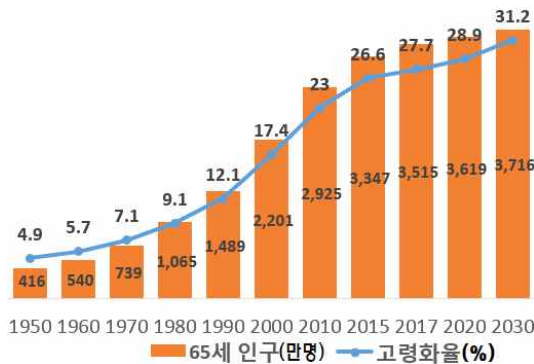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기 위하여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향후 65~75세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임. 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5세보다 늦추어 최장 75세를 선택할 경우 약 두 배의 연금액을 받도록 증액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일본 후생노동성<sup>1)</sup>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건강한 고령자에게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기 위하여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을 최고 75세까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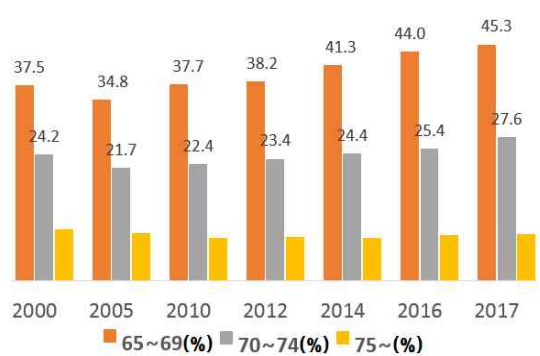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1950년 416만 명에서 2030년 3,716만 명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일본인 약 3.3명 중에서 1명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그림 1〉 참고)
- 이에 일본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고령자 취업인구가 821만 명(2017년)에 달하는 등 고령자 취업률이 〈그림 2〉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 일본 인구고령화 추이



자료: 高齢社会白書(2018)

〈그림 2〉 일본 고령자 연령대별 취업률 추이



자료: 高齢社会白書(2018)

1) 총리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언, 권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가 2019년부터 검토 중임

- 최근에는 정년연장 정책과 일손 부족현상으로 일본에서 고령자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정부는 2012년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추진한 이후 최근에 또 다시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정년 하한을 60세로 정하고 희망자에 대해선 65세까지 고용을 의무 또는 정년제도 폐지를 실시한 바 있음
- 최근 기업의 25.8%가 70세 이상을 고용<sup>2)</sup>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18년 정부 각료회의는 연금 수령개시연령을 현행 65세~70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연기하는 정책을 포함한 ‘고령사회대책’을 의결한 바 있음

■ **현행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구성되며,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함**

-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수령요건은 원칙적으로 65세<sup>3)</sup> 도달하고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자가 4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할 경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후생연금(소득비례부분) 수령요건은 현재 63세(2025년부터 65세)<sup>4)</sup>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자에게 정년퇴직과 관계없이<sup>5)</sup> 후생노령연금을 지급함
-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연금 수령개시를 최소 60세로 앞당기거나 최장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음
  - 부부 2인 평균소득 가구가 연금수령을 70세부터로 연장할 경우 65세부터 수령할 때와 비교하여 약 11만 엔이 증액되어 33만 엔을 수령할 수 있음<sup>6)</sup>

■ **최근 고령자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고령자의 취업의욕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인 65세 이후 기업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과 근로소득액 합산 금액이 총 28만 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연금액이 절반으로 감소(재직연금)하는 불이익 때문에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음
- 또한,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60대의 임금액이 50대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적연금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재직 중에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어 더 많은 연금액을

2) 일본후생노동성(2018), 고용실태조사

3) 국민연금이 실시된 1961년부터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65세임

4) 198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과 일치하도록 계획되어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65세이나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5) 다만, 연금액과 근로소득액 합산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6) 厚生労働省年金局(2018, 11)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놓치고 있음

■ 이에 후생노동성은 연금수령 시기 선택제 도입과 취업 고령자의 연금수령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주요내용은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향후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65~7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연금 수령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연기 시 <표 1>과 같이 현행 연간 증액률을 8.4%(월 0.7%)에서 9.6%(월 0.8%)로 인상하여 70세로 연기할 경우 약 1.5배, 75세로 연기할 경우 약 두 배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할 예정임

<표 1>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 선택 시 증액률

연령	65세	66세	67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현행	0%	8.4%	16.8%	42.0%	청구 불가능				
개정안	0%	9.6%	19.2%	48.0%	57.6%	67.2%	76.8%	86.4%	96.0%

자료: 厚生労働省年金局(2018), 雇用の変容と年金

- 또한 고령자가 계속 근로하여 근로소득과 연금액을 동시에 받을 경우 현행 합산금액 한도를 인상하고 연금액 감액률을 현행보다 인하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할 예정임
  - 후생노동성은 2019년 공적연금 재정검증 실시와 함께 연금수령 개시연령 조정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2020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상과 같이 공적연금 수령연령을 연장하는 일본의 정책은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 확대를 장려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kiri**